울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나7896 부당이득금반환 등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B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4. 11. 4. 선고 2014가소12617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7. 22.
판 결 선 고	2015. 8. 2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0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사실의 인정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,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1) 피고는 수수료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농협은행 통장(계좌번호: 125-02-××××××)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.

(2) 원고는 2014. 3. 24. 씨티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"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"라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(계좌번호: 346-××××××-01-013)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,600,000원을 송금하였는데,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,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었다(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)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의 양도, 양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통장 및 비밀번호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하였는바, 전국적으로 속칭 '보이스피싱' 등의 전자금융사기 범죄행위

가 횡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,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및 비밀번호가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,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므로,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,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제한

다만 원고로서도 소위 '보이스피싱'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,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,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%로 제한함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,300,000원(2,600,000원 × 0.5)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. 10. 15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. 11. 4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

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윤성

판사 정우철

판사 김승현